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14,549,531	21,436,486
일반회계		641,212,217	19,236,367
특별회계		73,337,314	2,200,119
	공기업특별회계	44,977,655	1,349,33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4,977,655	1,349,330
	기타특별회계	28,359,659	850,79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78,743	20,362
	자활기금특별회계	2,294,279	68,828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491,030	44,73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23,547	6,706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17,009	6,510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1,707,995	51,240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3,089	6,093
	수질개선특별회계	21,543,967	646,31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300,000천원으로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310,80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